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3. 제안 이유

- ㅇ 급속한 신산업의 혁명적 발전은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와 신산업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이 성공의 관건으로
- ㅇ 21세기 신산업인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등을 우리도 핵심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·지원하고자
- ㅇ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,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- ㅇ 법인명칭을 "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"으로 함 (제3조)
- ㅇ 진흥원은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, 지식·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(제6조)

- ㅇ 진흥원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의출연금 등으로 함 (제7조)
- ㅇ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제6조)
- ㅇ 진흥원의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(제10조)
- ㅇ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함 (제11조)

5. 검토 의견

○ 21세기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등을 우리도 핵심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
○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
○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는 업무감독과 필요시 조사,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개의 조항으로 삽입해야 할것과

○ 중앙, 도, 시군 등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출연금 외에 발생되는 기타 수입금에 대한 처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.

○ 또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10호와 제9조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